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30일 17시 43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급수설비의 철거	3

급수설비의 철거

2014.04.17 조회수 613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49
담당부서	상수도과
상위법령	수도법 제38조
조례	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
유형	2호 -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
등록사유	국토도시개발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규제내용	제47조(급수장치의 철거)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시설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시장이 철거할 수 있다.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. (개정 2013. 1. 10) ③제1항 및 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.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48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53

Yeosu Web Contents

